

## 인문지문 (가)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사유 과정은 사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이를 사과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 감각 기관을 눈으로 구체화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과가 현실에 실재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 일반적이라는 표현에서 글이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가볍게 예상하면 좋다.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다. 핵심만 먼저 파악해보자
-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 중에는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 여기서 사유는 첫 문장에 나왔던 “사

과의 형태나 색깔이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오고...” 부분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 정리하면 근대 철학자 중에서는 대상의 실재함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 철학에서 굉장히 빈출된 소재라서 익숙함을 느꼈어야 한다. 처음봤다면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해서 찾아보자.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한 여러 철학적 논변이 나타나면서 하나의 공통된 입장이 형성되었다.

- 이러한 의심은 당연히 ‘대상의 실재함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하는 것인가’ 일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지 않으며, 사유와 대상이 따로 분리되어서는 어떤 것도 접근이나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대상의 실재함이 우리의 감각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즉, 사유(과정) 없이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유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다 눈으로 사과를 보는 이미지로 구체화하자.

현대 철학자 메야수는 이러한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하며, 사유 의존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 여기서 집중하지 않았으면 헛갈렸을 수도 있다. 메야수는 위의 입장을 상관주의라고 명명했으나, 본인은 반대 입장이다.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 조금 더 생각하면 메야수는 인간의 사유에 대상과 사유가 아닌 다른 것도 있다고 봤다는 말이다.

메야수는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전부를 '선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함을 과학의 발견들이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 '선조적인 것'이니까 당연히 인간의 출현에 선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거다. 그리고 여기서 '전부'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그냥 의식만 하고 넘어가자.

가령 방사성 동위 원소의 측정으로 '46억 년 전에 최초의 지구가 존재했다.'라는 것이 입증

되었다.

- 앞서 말한 '선조적인 것'의 예시이다.

메야수에 따르면,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를 부정하면 선조적인 것을 전제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 선조적인 것 = 인간이라는 종의 출현에 선행하는 존재
- (전부라고 했으니 같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주장한 메야수는 이러한 존재가 가능성을 가진 우연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 = 46억 년 전 최초의 지구 = 이러한 존재

예를 들어 공전하는 달은 일식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일 뿐, 달의 공전이 일식과의 인과적인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그러니까 우연성이다.

태양의 변화로 일식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연성을 가진 존재에 대

한 그의 주장은 우리 인간이 이러한 존재가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여기서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는 앞에서 나온 대상과 사유와 대립이다.
- “그의 주장은, 상관주의가 유럽 대륙 철학의 주요 입장 중 하나가 되면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의 관계로 제한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2문단 첫번째 문장이다.
- 여기서 메야수의 문제의식은 왜 인간의 사유를 대상과 사유로만 제한했냐는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의견이 나오는거다. 대상과 사유 말고 가능성들에 대해 사유도 해야한다 이 말이다.

메야수는 상관주의에서 부정하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하며 이에 대해 사유할 수 있음을 논증했다.

또한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가 실재한다고 보는 그의 철학은 인간 중심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확장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여기서 나름 어려운 포인트는 사유의 확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야 5번의 2번 선지를 확실하게 지울 수 있다.

## 인문지문 (나)

지동설이 인정되기 전까지의 태양계는 천동설에 따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의 태양계는 지동설의 설명과 같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고 본다.

- 천동설 지동설은 다 알죠.

굿맨은 천동설이나 지동설과 같은 것을 버전이라고 하였다.

- 소소한 포인트를 잡자면 천동설과 지동설 둘 다 버전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버전은 대상을 배열하고 범주화하는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기호들의 체계이다. 태양을 신처럼 상징하는 그림과 같은 비언어적인 기호나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진다.'와 같은 언어적 진술 모두 일종의 버전에 따른 것이다.

- 여기서 대상은 태양으로 보는게 편하겠다.

굿맨은 이러한 버전들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하며, 이 버전들에 의해 세계가 구성된다고 주

장하였다.

- 여기서 (가) 지문과의 연관성을 느껴야 한다. '인간이 존재하던 모든 시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는 세계는 구성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 뭔가 (가) 지문과 느낌이 비슷하다. 사유가 없다면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세계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한다고 간주된 것이다.

- 무언가 (가) 지문의 상관주의와 입장이 비슷해 보인다.

따라서 그의 관점에서 세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을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하는 버전이 없던 시기에는 태양은 신이라는 범주로 분류되었을 수 있다.

- 대상(태양)을 신(비언어적)으로 배열(범주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양이 항성으로 존재하게 된 시점은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으로 구성된 버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는 세계의 존재 시점이 버

전에 의해 구성된 시점에 의존하게 됨을 나타낸다.

이는 인간의 사유와 독립한 존재는 실재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이럴 줄 알았다. (가)에서 나온 이야기랑 비슷하다.

세계에 대한 굿맨의 입장은 버전의 다양성과 상대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모든 버전이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다.

- 상대적이긴 한데 버전이 막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분긍정이니까 출제 포인트이다. 잘 잡고 가자.

그는 '옳음'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옳은 버전만이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그는 옳음을 '적합함'으로 설명하면서, 적합함으로 버전의 옳음을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 적합함 -> 옳음 -> 세계 구성
- 순서 바뀌서 내기 좋은 부분이다

적합함은 실용, 범주, 세계에 대한 설명적인 측면에서 버전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6세기 무렵의 서구에서 천동설이 옳은 버전이었던 것을 들 수 있다. 천동설은 사회적, 종교적 관점에서 유용했으며, 별의 운동에 대

해 적합 하게 범주화되었다. 또한 지구의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다는 점에서 별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했다. 하지만 후대에 지동설이 옳은 버전이 되었던 것처럼 옳음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굿맨의 입장이다.

→ 그래그래 시대에 따라 옳은 버전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버전에 대한 굿맨의 주장은 '옳음'으로 인정받은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세계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되어야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더욱 향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계속 같은 말 한다.

## 기술 지문

디지털카메라는 피사체에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 이미지 센서에 피사체의 상이 맺히도록 만들고, 이 상을 이미지 데이터로 변환하여 한 장의 사진으로 저장한다.

→ 2021. 06 카메라 지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다.

→ 과정을 이미지화해서 기억하는게 좋다. 빛이 피사체 -> 렌즈 -> 센서(아래에서 나오는 화소 평면) 순서로 도달한다. 그림으로 그려 놓는 것도 좋다.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곳은 많은 수의 아주 작은 화소가 격자 모양으로 배열된 '화소 평면'이다. 여기에 피사체의 상이 맺힐 때, 화소 각각의 위치에서 얻어진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배열이 한 장의 사진이 된다.

→ 최종적으로 센서에 상이 맺히는데 이곳에는 '화소평면'이 있다. 좌표평면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다.

→ 항상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좋다. 빛의 밝기를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

화소는 빛에 반응하는 소자로, 노출된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전압을 출력한다.

-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화소의 각각 위치에서 얻어지는 빛의 밝기에 따라 비례하는 전압이 출력될 것이다.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화소처럼 쓸 수도 있는데, 동일한 화소를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면 하나를 사용할 때보다 약한 빛도 검출할 수 있다.

- 어떻게 더 약한 빛도 검출이 되는 걸까? 잠깐 생각해보고 모르겠으면 아무튼 좋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
- 만약 화소가 1개라면 0 / 1 / 2 / 3 이런 식으로 밝기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 그런데 화소가 3개이면 같은 0 + 자 연수라는 조건에서 000 / 001 / 011 / 111 처럼 더 쪼개진다.

만일 빨강, 초록, 파랑의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 화소를 묶어 한 개의 화소를 구성하면,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 RGB

이미지 센서의 해상도는 화소 평면의 면적에 대한 화소의 전체 개수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값이 클수록 세밀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센서의 성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다.

- 모니터 설정할 때 1920 x 1080이 화소의 개수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가로에 1920개의 화소, 세로에 1080개의 화소가 있다는 말이다.
- 당연히 해상도가 높아지면 선명해진다. 처음보는 개념이면 그냥 화소가 많아지면 해상도가 높아지고 선명해진다고 알고 넘어가자.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각 화소에 노출된 빛의 세기를 데이터로 변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화소를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ADC)'에 연결하여 화소의 출력 전압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바꾼다.

- 앞에서 나온 내용이다. 화소의 각 위치에 들어오는 빛의 밝기에 따라 비례하는 전압이 출력된다. 그리고 이 전압을 ADC가 데이터로 바꿔준다.

ADC는 입력 전압의 값을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할 때는 일정한 수의 비트로 표현한다. 이 비트의 개수를 데이터 폭이라고 한다.

- 2018. 09 양자역학 지문에서 비트의 개념은 다룬 적이 있다. 모르면 지금 알고가자.

분해능은 입력 허용 구간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ADC의 성능을 나타내는 한 지표이다. 가령 어느 ADC의 입력 전압의 허용 구간이 0 ~ 1볼트(V)라고 하자. 만일 화소의 출력 전압에 대해 ADC의 데이터 폭이 1비트면, 빛의 세기를 0.5V를 기준으로 0V부터 0.5V보다 작은 구간은 흑으로, 0.5V부터 1V까지의 구간은 백으로 2단계로 명암을 구분한다.

- 여기서부터 비트의 개념을 모르면 상당히 힘들어진다. 1비트는 0 / 1 두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
- 따라서 0 ~ 0.5의 구간은 0으로 표현하므로 흑, 0.5 ~ 1의 구간은 1로 표현하므로 백이다.

만일 데이터 폭이 2비트면 0 ~ 1V의 구간을 4단계로, 4 비트면 16단계로, 8비트면 256단계로 서로 다른 밝기의 명암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폭이 넓은 ADC를 쓰면 세밀한 명암의 표현이 가능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 앞문장을 잘 이해했다면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다. 이해 못했으면 데이터 폭이 커지면 세밀한 명암 표현이 가능하다고 인지만 하고 넘어가자.

한편 ADC가 입력된 전압을 데이터로 바꾸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를 변환 시간이라고 하며, 성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된다.

- 당연히 변환시간이 짧아야 좋지 않을까?

이미지 센서가 온전한 한 장의 사진을 얻으려면 화소별로 빛의 세기를 나타낸 데이터를 화소와 같은 형태의 배열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미지 센서 내부에 화소의 수만큼 ADC가 있으면 일대일로 연결하여 한 번에 전체 데이터를 얻으면 된다.

- 앞을 잘 이해하고 넘어왔다면 술술 읽혀야 한다. 화소 1개 - ADC 1개로 구성되어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미지 센서에는 수백만 개의 화소가 있는 데, 이만큼의 ADC를 이미지 센서에 만들어 넣기는 어렵다. 그래서 적은 수의 ADC로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 ADC를 수백만개 넣기에는 문제가 있나보다. 그래서 다중 스위치를 이용한다.
- 그러면 자연히 이 다중 스위치가 어떻게 ADC를 1대1 대응으로 쓴 것처럼 전체 화소의 데이터를 얻는지 주목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중 스위치는 M개의 입력을 N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단위로 N개의 출력으로 연결해 주는 장치이다. 이 때 N은 M과 같거나 M보다 작아야 한다.

- M과 N에 숫자를 넣어서 생각해보자. 5개의 입력을 7개씩 여러 개의 블록으로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화소 평면의 전체 화소를 순서에 따라 일정한 개수로 묶은 블록으로 나누고, 이 것을 다중 스위치를 통해 순서대로 여러 번 ADC로 보내 블록 단위로 데이터로 바꾼 다음, 이것을 차례로 다시 모으면 한 장의 사진이 완성된다.

- 솔직히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다만 '순서대로' 표현은 챙겨가자. 2021. 11 렌더링 지문에서도 선지에 활용된 적이 있다.

가령 10,000개의 화소가 있고 10개의 ADC가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 순서대로 화소를 10개씩 묶어 블록으로 만들고 각 블록을 10개의 ADC에 순서대로 1,000번으로 나누어 보낸다. 그러면 10개씩 묶인 데이터가 순서대로 1,000개로 변환되므로 이를 합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한다. 하지만 ADC가 1,000번의 동작을 해야 하므로 사진 한 장의 데이터를 얻는 전체 변환 시간은 ADC의 변환 시간의 1,000배가 된다.

- 그냥 10개씩 1000번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1대1 대응으로 ADC가 있을 때보다 당연히 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1000번 동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 2021. 11 렌더링 지문의 GPU 부분과 상당히 느낌이 유사하다.

## 법지문

법률상 유언은 자기의 사망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끔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법률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유증이라 하는데, 유증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유증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증여와는 다르다.

- 증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증과 증여는 모두 의사 표시를 기반으로 하는 법률 행위이지만, 유증은 단독행위로, 증여는 계약으로 분류된다.

- 유증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니까 단독행위이다.

유언의 의사 표시는 법이 규정한 일정한 방식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자필 증서로 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남이 대필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으로 방식을 정하는 까닭은 당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생기는 탓에 미리 본인의 진의를 확실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당사자가 죽고 나면 더 이상 당사자의 진의에 대해서 물어볼 방법이 없어진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당사자가 말로만 합의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

- 여기서 계약으로 위에서 말한 증여를 떠올려줘야 한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 사람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

- 아래 문장과의 연결을 잘 보자.

혹시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때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유언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 앞문장에서 우리 민법은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다. 만약 이런 문구가 유언에 있다면 이는 유언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유언으로 재산 처분의 내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적으로 공동 상속인 사이에 정해진 상속 재산의 비율인 상속분을 법률로 정해진 비율과 달리 정하는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정 상속인, 공동 상속인 같은 용어가 나오는데 이해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 다만 2023. 09에서 답하게 다른 주제라 알고 있어야 하는게 맞다.

다만 유증으로써 배우자나 자녀에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고, 공동 상속인이다. 그런데 공동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을 달리 정하는 유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물려줄 수 있을까?
- 여기서 그냥 문제의 선지를 보고 생각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공동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재산을 그냥 유증하면 결과적으로 상속분과 다르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 관

계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다. 포괄적 승계라서 자산뿐 아니라 채무까지도 이전된다.

- 채무도 이전된다는 것이 포인트이다.

이러한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생긴다는 점에서 법률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의사 표시가 아닌 사망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격의 순위를 정해 놓아서,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제1 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 등의 직계 비속이고, 제2 순위는 부모 등의 직계 존속이다. 배우자는 제1 순위자와도 제2 순위자와도 같은 순위이다.

같은 순위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는 그 50%를 얹어 준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아들, 딸이 한 명씩 있다면 그 상속분의 비율은 각각 1.5 : 1 : 1이다.

- 정법 선택자는 이미 아는 내용이고 과거 기출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유증은 특정 재산에 대해서 하는 특정 유증이 보통이지만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다.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를 또는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상응하는 몫을 물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 여기서 수증자의 의무는 앞에서 말한 채무, 즉 빚을 말한다.

이에 비해 특정 유증에서는 목적물인 특정 재산에 대한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한다.

- 앞의 포괄 유증과 차이를 잘 잡고 넘어가자.
- 포괄 유증은 사실상 상속인과 동일한 취급이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즉 유언자가 죽은 즉시 수증자는 권리를 얻는다.
- 반면, 특정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일단 재산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에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유증을 이행할 의무도 상속되므로 그 이행이 완료되는 때에 수증자는 재산권을 취득한다. 유증을 받는 수증자는 법정 상속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달리 수증자는 사람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시설 등도 될 수 있다.

- 상속은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유증은 아니다.

즉, 유언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 재산 전부가 특정한 자녀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되는 일도 있다.

- 그럴 것이다.

다만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자기 상속 분의 일정 비율을 최소한의 몫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2023년 기출에 나왔다.